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59
----------	------

2013년 7월 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2012년 6월 29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교사임용 시험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2012년 6월 29일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었고,
- 2012년 12월 26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임용 시험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

료 전액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이 시행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기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응시수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응시수수료의 반환 조건으로 나열된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은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통념상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사유로 인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는 동일한 내용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안의 규정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59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u>반환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제3조(면제와 반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p> <p>.....</p> <p>.....</p> <p>.....<u>반환하여야 한다.</u></p> <p>1. ~ 3.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자는 1인당 2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
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응
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